

의안번호	2202936
의 회 인	박지혜 의원
회 답 일	2024. 10. 7.
추계번호	24A2985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신설 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)	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“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” 포함	의무규정
2	안 제45조의2제4항 제8호의2 신설 (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의 수립)	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기본계획에 “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내 공장건축물의 지붕·옥상 등의 공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” 포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33조제7항제5호의2 신설 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5조의2제4항 제8호의2 신설 (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의 수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현행법 제33조¹⁾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(이하 “관리기본계획”)과 제45조의2²⁾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(이하 “구조고도화사업계획”)에 “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는 내용
- 개정안에 따라 관리기본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으로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
 - 현행법 제30조³⁾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,

1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33조(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) ① 관리기관은 (...)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(...)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(이하 “관리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(후단 생략)

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
2.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
3. 산업단지의 용지(이하 “산업용지”라 한다)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
4.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
5.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2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45조의2(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) ① 관리권자는 (...)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(이하 이 장에서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(...)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산업 여건의 변화,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
2.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·산업집적기반시설·공공시설 등의 유지·보수·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(이하 “구조고도화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후단 생략)

1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
2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
3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
4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
5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
6.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
7. 채원조달방안
8.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3)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30조(관리권자 등)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
2.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)
3. 농공단지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므로, 개정안에 따라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, 추계에 필요한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데 따른 소요 비용을 추계하려면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범위와 지원 요건 및 지원 수준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함

○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규정될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등의 신·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
[참고자료] 산업단지 내 신·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현황

□ 이에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“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”을 포함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산업단지 내 신·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(코드) -내역-내내역	기금	소관	사업 개요	예산(안)	
				2024	2025
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(5202-303)	전력산업 기반기금	산업통상 자원부	-	(167,489)	(156,373)
- 건물지원	"	"	· 상가, 공장 등 보급 효과가 우수한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기 위한 설치비 보조	36,646	32,093
- 사후관리	"	"	·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설비에 대한 고장접수지원,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	2,312	2,312
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(융자)(5202-304)	전력산업 기반기금	산업통상 자원부	-	(369,280)	(326,300)
- 생산및시설자금	"	"	·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· 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 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 또는 이자보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	361,280	324,300
탄소중립 설계투자 지원 (6131-303) - 산업단지 탄소중립지원 - 에너지 자금지속형 인프라 구축	기후대응 기금	산업통상 자원부	·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 분산에너지원과 친환경에너지 활용 인프라* 구축 * 연료전지, 태양광, ESS(Energy Storage System), V2G(Vehicle To Grid) ⁴⁾ 등	84,000	87,000

주: 1. 예산액의 경우 2024년은 확정예산, 2025년은 정부 제출 예산안 기준
 2. 각 세부사업 중 개정규정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역사업의 예산액을 기재
 3.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및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(융자) 사업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에도 상가, 산업단지 외 공장,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·생산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함
 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와 2024~2025년도 예산(안) 및 기금운용계획(안)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4) 전기차와 전력망 간의 양방향 에너지 송·수신 기술로,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음